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전번호 제2013 - 29 - 076호 (사건번호 : 201305조사010)

안 건 명 (주)LG 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LG 유플러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827번지
대표이사 이상철

의결연월일 2013. 7. 18.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등에 10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 가. 금 액 : 10,260,000,000원
 -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I. 기초 사실

1. 일반현황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1,048만명으로 전체 시장의 19.4%(‘13.5월말 기준)를, 매출액은 4조 3,560억원(‘12.12월말 기준)으로 18.6%를 점유하고 있다.

<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

(단위 : 천명, 십억원)

구 분	SKT	K T	LGU ⁺	합 계
가입자수 (점유율, %)	27,106 (50.2)	16,425 (30.4)	10,478 (19.4)	54,009 (100)
매 출 액 (점유율, %)	12,299 (52.5)	6,775 (28.9)	4,356 (18.6)	23,430 (100)

※ 출처 : 사업자 제출자료(2012년 영업보고서)

2.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혁

가. 보조금의 원칙적 금지(’00.6월 ~ ’06.3.27)

정부는 중고 단말기 양산·외화 유출 등 단말기 보조금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00.6월부터 이용약관에 보조금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이후에도 장려금 신설·증액,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보조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03.3.27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였다.

— < 관련 조항 > —

※ **舊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

5.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그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 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보조금 지급범위 확대('06.3.27 ~ '08.3.27)

이통사들은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자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자 변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 가입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발생시켰다. 이에 기존 가입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06.3.27일부터 2년간 18개월 이상 가입자와 신규서비스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허용토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였다.

— < 관련 조항 > —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2. 기간통신역무를 개시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지원의 기준 및 한도 등(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원기준의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고한 지원기준과 다르게 지원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SKT의 舊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35조(단말기 보조금 지급)

- ① 회사는 가입자에게 일체의 단말기 구입비용(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36조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단말기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합니다.)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보조금의 원칙적 허용 및 부당한 차별 규제('08.3.27 ~ 현재)

'08.3.27일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5가 일몰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이통 3사는 이용약관에 의무약정제와 연계된 보조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 관련 조항 〉

※ SKT의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9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 제36조(약정기간 설정) ①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제37조(보조금 지급) ① 회사는 제 35 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③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 ④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행위가 약관 위반, 이용자 차별 등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제재 가능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후 4회('10년, '11년, '12년, '13.3월)에 걸쳐 이통 3사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행위와 관련, ①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¹⁾과 ②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²⁾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1)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 :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예상이익×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 단말기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財源이 결합되어 조성되고, 제조사 財源은 다른 이용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없다는 점 고려

위법하다고 판단³⁾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10. 9.24일 '09년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과 함께 총 188.8억원의 과징금(SKT 114.8억원, KT 48억원, LGU+ 26억원)을 부과하였고, '11.9.19일에는 '11년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10년과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과 함께 총 136.7억원의 과징금(SKT 68.6억원, KT 36.6억원, LGU+ 31.5억원)을 부과하였으며, '12.12.24일에는 SKT 22일, KT 20일, LGU+ 24일의 신규 모집금지 등과 함께 총 119억원의 과징금(SKT 68.9억원, KT 28.5억원, LGU+ 21.5억원)을 부과하였고, '13.3.14일에는 시정명령 등과 함께 총 53.1억원의 과징금(SKT 31.4억원, KT 16.1억원, LGU+ 5.6억원)을 부과하였다.

3. 이동전화 시장현황

'12.12.24일 제재조치에 따른 신규모집 금지기간('13.1.7~3.13) 중 시장과열 정도를 나타내는 일평균 번호이동 가입자수가 LGU+의 금지기간 중에는 2.8만건, SKT 때는 2.5만건, KT 때는 3.1만건으로 과열기준(일평균 2.4만건)을 모두 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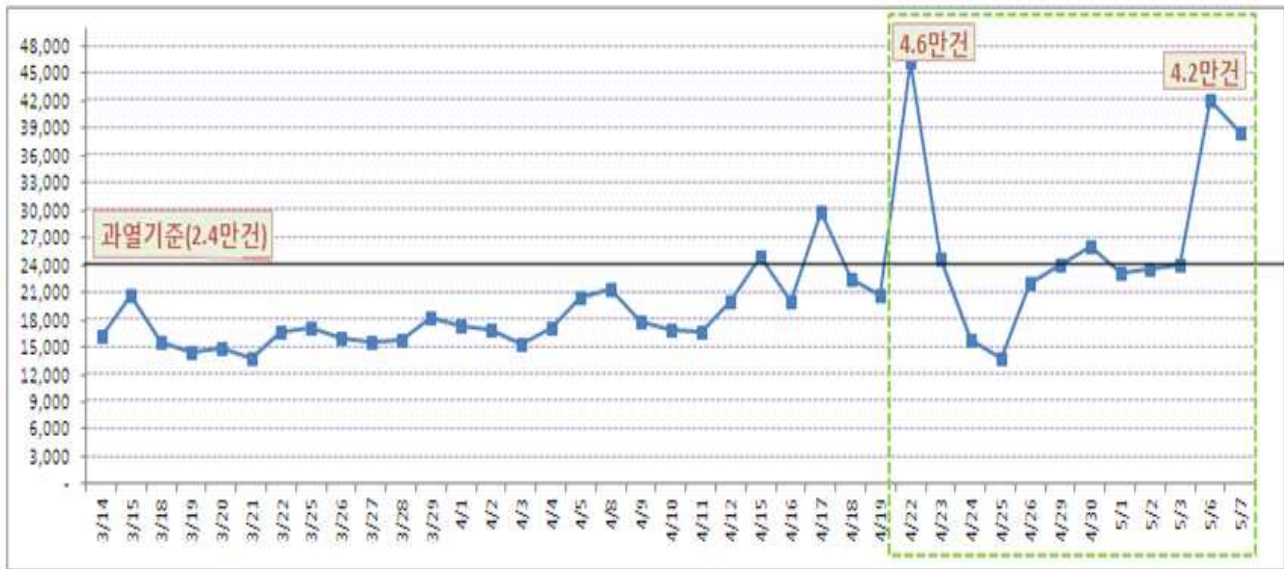
<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 >



3) 다만,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된 구형 단말기의 재고 소진을 위한 단말기 보조금은 사회통념상 정상적 상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적법하다고 인정

‘13.3.14일 제재조치 이후 한동안 시장이 안정적이었으나 4.15일부터 과열기준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주말을 낀 4.22일에 4.6만건, 5.6일에 4.2만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 '13.3.14 제재조치 이후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 >



한편, ‘13.1.7일부터 5월말까지 온라인 파파라치 신고센터4)에 접수되어 포상금이 지급된 총 889건을 살펴보면, 온라인 시장에서 1인당 623천원의 높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온라인 파파라치 신고포상제’ 운영현황 >

(단위 : 건, 천원)

구 분	접수건수	포상건수	평균 포상금	평균 보조금
SKT	876	372	785	634
KT	918	400	771	627
LGU+	282	117	677	576
전 체	2,076	889	764	623

4) '13.1.7일부터 이통3사 합의에 의해 이동전화 온라인시장에서의 불·편법 가입자 모집행위를 근절하고자 “온라인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주관으로 시행

II. 사실조사 결과

1.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은 '13.5.8일부터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피심인의 본사 및 전국 주요권역 유통망을 현장조사 하였다. '13.1.8~3.13일 및 '13.4.22~5.7일 기간(이하 "조사대상 기간")의 신규·기변 가입 건에 대해 영업정책·보조금 지급 수준·이용자 차별 여부 등을 현장 수집자료, 전산자료, 대리점 단가표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동안 수시로 마케팅 영업정책을 수립하여 지역본부 및 지점 등에 전파하였으며, 지역본부(지점 포함)는 단말기별로 자체 리베이트 정책을 추가하여 대리점에 정책서를 배포하였고, 대리점은 자체 펀딩능력을 고려한 최종 단가표를 작성하여 대리점과 사적 계약 관계에 있는 판매점에 배포하였으며, 판매점은 단가표를 기준으로 이용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며 판매하였다.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동안 목표달성과 번호이동 가입자의 이탈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 왔으며, 특히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장과열을 유발하였다.

2. 신규모집 금지기간('13.1.8~3.13일)

가. 조사 대상 건수

조사대상 기간('13.1.8~3.13) 피심인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전체 가입자 중 신규 가입 40,973건(번호이동 36,424건, 일반 4,549건)⁵⁾과 기기변경 가입 12,375건 등 총 53,348건을 분석⁶⁾하였으며, 단말기는 총 28개 기종이었다.

5) 신규 가입자는 일반(010)과 번호이동(MNP : Mobile Number Portability) 가입자로 구성되어 있음

6) 단말기 구매없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중고폰 개통건과 선불요금제 가입건, 태블릿 PC 및 무선인터넷 모뎀 가입건 그리고 실버폰 개통건 및 2G 서비스 가입건에 대해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 조사대상 건수 〉

(단위 : 건)

구 분	1.8~1.30	1.31~2.21	2.22~3.13	합 계
신 규	-	20,627	20,346	40,973
- 번호동	-	18,108	18,316	36,424
- 일 반	-	2,519	2,030	4,549
기기변경	5,165	3,126	4,084	12,375
합 계	5,165	23,753	24,430	53,348

※ 조사대상 기간은 이통 3사의 신규모집 금지기간인 '13.1.8~3.13일(LGU+ '13.1.8~1.30일, SKT '13.1.31~2.21일, KT '13.2.22~3.13일)로, 평일 개통 기준으로 분석

나. 기간별 보조금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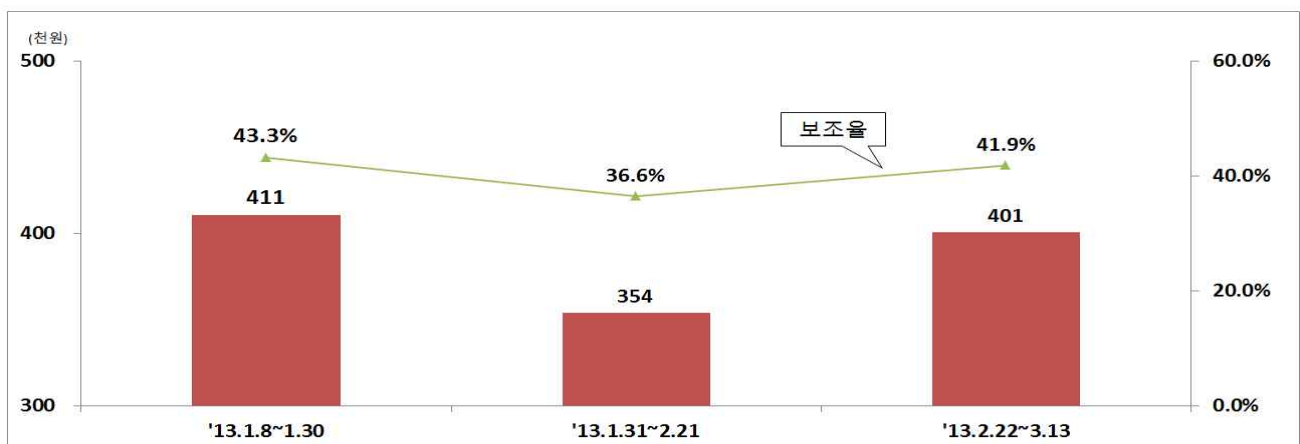
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이 한 가입자당 지급한 평균 보조금은 381천원이며, 평균 출고가 960천원으로 출고가 대비 보조금 비율(이하 '보조율')은 평균 39.7%였다.

〈 출고가 대비 보조금 비율 추이 〉

(단위 : 천원, %)

구분	1.8~1.30	1.31~2.21	2.22~3.13	전체 평균
출고가	949	967	955	960
보조금	411	354	401	381
보조율	43.3	36.6	41.9	39.7

※ 출고가 및 보조금 금액은 평균 금액임



다. 가입형태별 보조금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신규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368천원인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423천원으로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신규 가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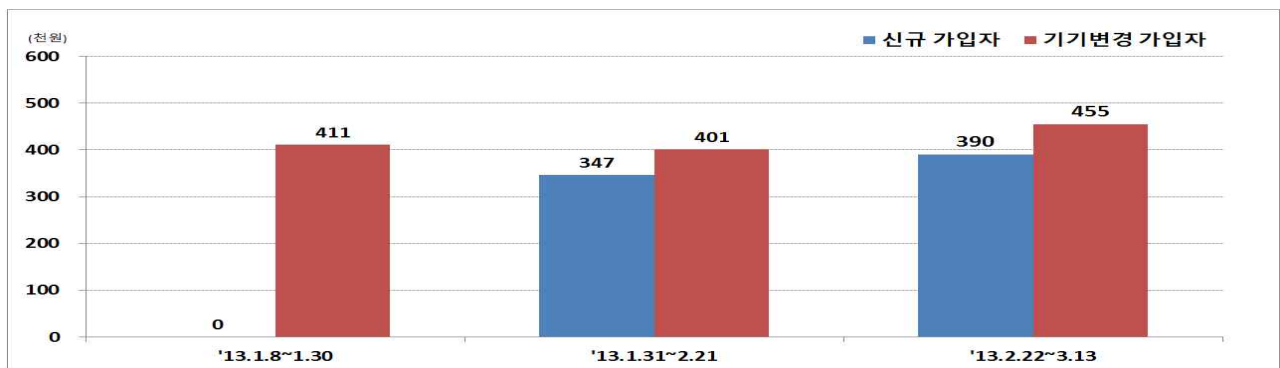
자사 신규모집 금지기간('13.1.8~1.30)에 이탈한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타사의 마지막 신규모집 금지기간('13.2.22~3.13) 중에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396천원, 기기변경 가입자에게 455천원의 높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였다.

〈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의 보조금 추이 비교 〉

(단위 : 천원)

구분	1.8~1.30	1.31~2.21	2.22~3.13	전체 평균
신규(A)	-	347	390	368
- 번호이동	-	353	396	375
- 일 반	-	302	337	318
기기변경(B)	411	401	455	423
보조금차이(A-B)	-	54	65	55

※ 보조금 금액은 평균 금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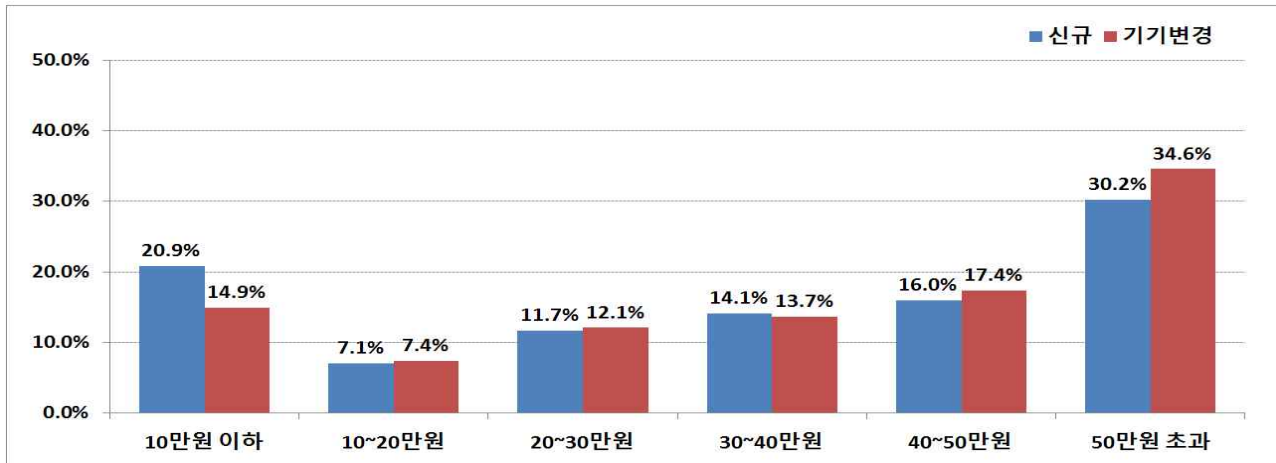


보조금 수준별로 가입자 분포를 살펴보면, 30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받은 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가 각각 60.3%와 65.7%로 기기변경 가입자가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조금 지급수준별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 분포 비교 〉

(단위 : 건, %)

구 분	10만원 이하	10~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만원 초과
신규 (점유율)	8,544 (20.9)	2,902 (7.1)	4,798 (11.7)	5,793 (14.1)	6,556 (16.0)	12,380 (30.2)
기기변경 (점유율)	1,844 (14.9)	918 (7.4)	1,497 (12.1)	1,691 (13.7)	2,149 (17.4)	4,276 (34.6)



라. 연령대별 보조금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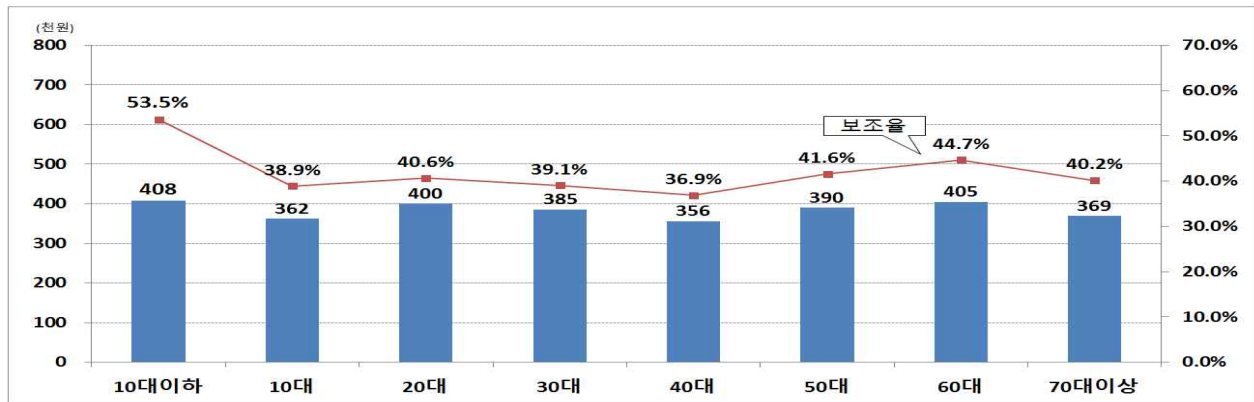
피심인의 가입자들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356천원으로 가장 낮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10대 미만 가입자는 408천원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그 외 연령대별 보조금 수준은 362~405천원으로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 연령대별 보조금 지급 수준 및 비율 〉

(단위 : 천원, %)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출고가	763	929	985	986	966	939	905	919
보조금	408	362	400	385	356	390	405	369
보조율	53.5	38.9	40.6	39.1	36.9	41.6	44.7	40.2

※ 출고가 및 보조금 금액은 연령대별 평균 금액임



마. 동일기종 단말기 간 보조금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주요 6개 LTE 단말기 기종에 대한 보조금 수준을 살펴 본 결과, 동일기종의 단말기 간에도 시기와 가입형태에 따라 보조금 수준이 다르며, 같은 날짜에도 가입자 간 보조금 지급 폭이 변동하여 동일 기종 간에도 보조금 차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주요 LTE 단말기에 대한 기간별 보조금 추이를 보면, 갤럭시S3 · 갤럭시노트2 등 전반적으로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간별로도 차별이 나타났다.

< 단말기 기종별 보조금 추이 >

(단위 : 천원)

모델명	상품명	1.8~1.30	1.31~2.21	2.22~3.13	평균
SHV-E210S_16G	갤럭시S3LTE_16G	367	379	491	445
SHV-E250S_32G	갤럭시노트2_32G	446	317	353	348
LG-F180S	옵티머스G	484	398	408	407
LG-F240S	옵티머스G프로	-	463	365	369
IM-A860S	베가NO.6	-	260	349	342
IM-A850S	베가R3	443	313	309	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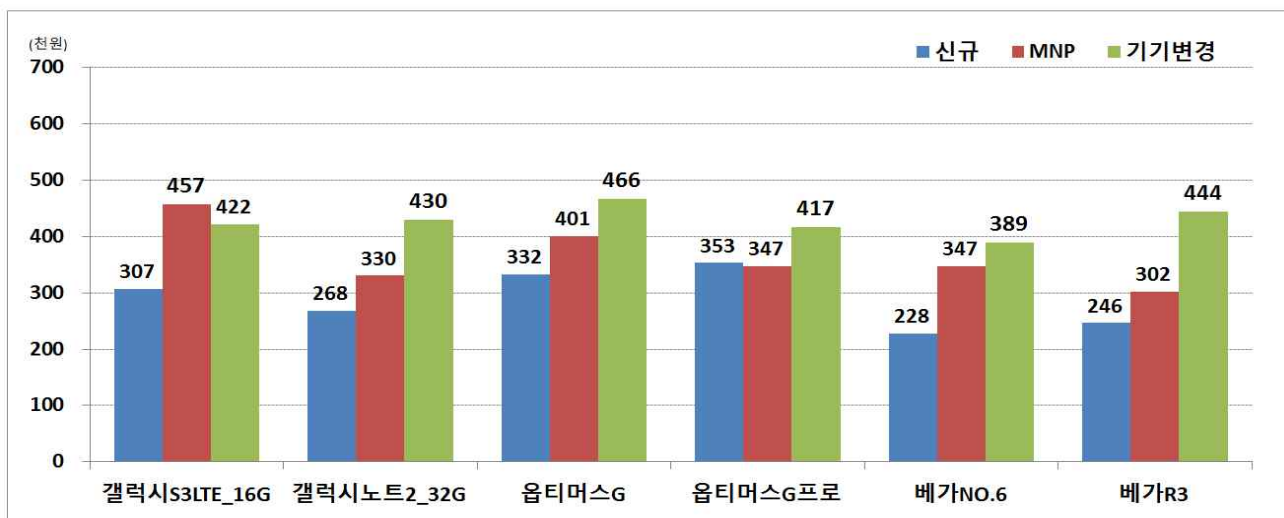
※ 기종별 보조금 금액은 평균 금액임

또한 주요 단말기를 가입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단말기에 따라 갤럭시 S3의 경우 번호이동과 신규 가입자 간 차별이, 갤럭시노트2의 경우 기기변경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간 차별이 컸으며, 대체로 기기변경 가입자에 보조금 지원이 높게 지급되었다.

〈 동일기종 단말기의 가입형태별 보조금 추이 〉

(단위 : 천원)

모델명	팻네임	출고가	신규		기기변경
			010신규	MNP	
SHV-E210S_16G	갤럭시S3LTE_16G	901	307	457	422
SHV-E250S_32G	갤럭시노트2_32G	1,089	268	330	430
LG-F180S	옵티머스G	1,000	332	401	466
LG-F240S	옵티머스G프로	968	353	347	417
IM-A860S	베가NO.6	849	228	347	389
IM-A850S	베가R3	1,000	246	302	444



동일한 단말기를 구매한 가입자 간에서도 보조금 지원의 가입자 간 차별이 심하였는데, 갤럭시노트2의 경우 최대 1,117천원에서 최소 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갤럭시S3의 경우 출고가 대비 평균 보조율도 49.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동일기종 단말기의 보조금 차이 〉

(단위 : 천원)

모델명	폰트명	출고가	보조금			
			평균	보조율	최대	최소
SHV-E210S_16G	갤럭시S3LTE_16G	901	445	49.4	929	0
SHV-E250S_32G	갤럭시노트2_32G	1,089	348	31.9	1,117	0
LG-F180S	옵티머스G	1,000	407	40.7	1,027	0
LG-F240S	옵티머스G프로	968	369	38.1	998	0
IM-A860S	베가NO.6	849	342	40.3	847	0
IM-A850S	베가F3	1,000	334	33.4	98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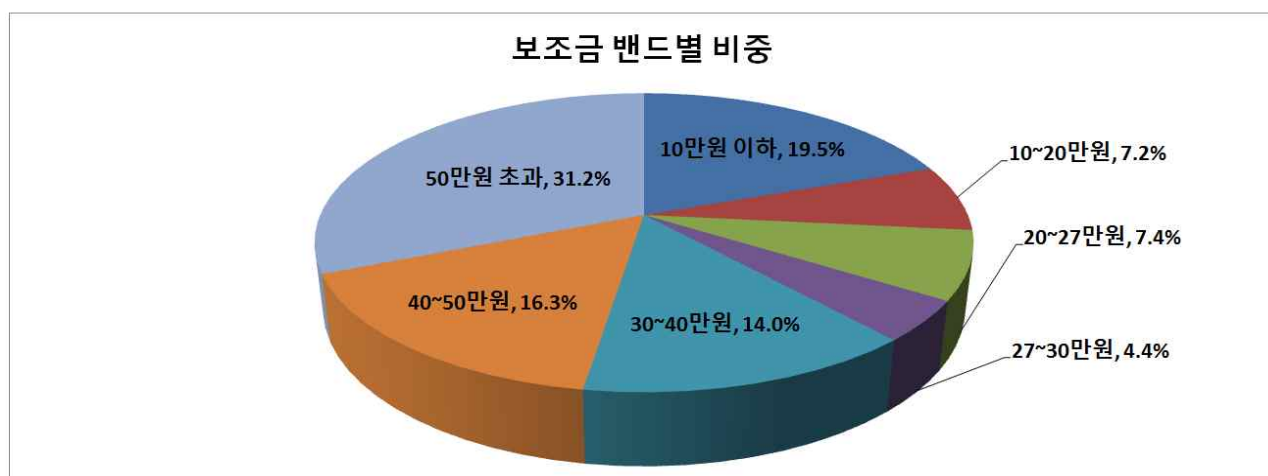
바. 보조금 밴드별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분석대상 가입자를 보조금 밴드별로 분석한 결과, 30만원 초과 보조금을 지급받은 가입자가 61.5%인데 반해 10만원도 받지 못한 가입자가 19.5%로 가입자 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여 이용자 차별이 심각하였다.

〈 보조금 밴드별 가입자 비중 〉

(단위 : 명)

구분	10만원 이하	10~20만원	20~27만원	27~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만원 초과	합계
가입자	10,388	3,820	3,941	2,354	7,484	8,705	16,656	53,348
비중	19.5%	7.2%	7.4%	4.4%	14.0%	16.3%	31.2%	100.0%



3. 과열기간('13.4.22~5.7일)

가. 조사 대상 건수

조사대상 기간('13.4.22~5.7) 피심인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전체 가입자 중 신규 가입 9,898건(번호이동 8,476건, 일반 1,422건)과 기기변경 가입 3,511건 등 총 13,409건을 분석⁷⁾하였으며, 단말기는 총 28개 기종이었다.

〈 조사대상 건수 〉

(단위 : 건)

구 분	4.22	4.23	4.24	4.25	4.26	4.29	4.30	5.1	5.2	5.3	5.6	5.7	합 계
신 규	2,103	281	316	309	511	1,361	606	470	404	418	2,317	802	9,898
- 번호이동	1,884	229	256	244	421	1,139	513	388	333	342	2,049	678	8,476
- 일 반	219	52	60	65	90	222	93	82	71	76	268	124	1,422
기기변경	524	123	161	150	269	562	237	238	188	186	649	224	3,511
합 계	2,627	404	477	459	780	1,923	843	708	592	604	2,966	1,026	13,409

※ 조사대상 기간은 과열기간으로 판단한 '13.4.22~5.7일로, 평일 개통 기준으로 분석

나. 기간별 보조금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이 한 가입자당 지급한 평균 보조금은 278천원이며, 평균 출고가는 863천원으로 출고가 대비 보조금 비율은 평균 32.2%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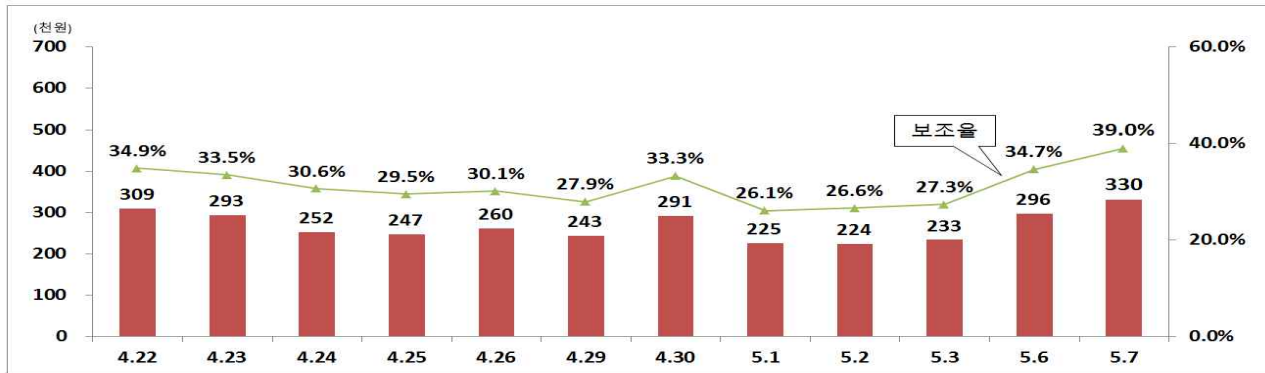
〈 출고가 대비 보조금 비율 추이 〉

(단위 : 천원, %)

구분	4.22	4.23	4.24	4.25	4.26	4.29	4.30	5.1	5.2	5.3	5.6	5.7	전체 평균
출고가	886	875	821	837	864	869	874	863	842	853	855	845	863
평균보조금	309	293	252	247	260	243	291	225	224	233	296	330	278
(보조율)	34.9	33.5	30.6	29.5	30.1	27.9	33.3	26.1	26.6	27.3	34.7	39.0	32.2

※ 출고가 및 보조금 금액은 평균 금액임

7) 과열기간('13.4.22~5.7)의 전체 분석대상 건수 13,409건 중 4,132건(30.8%)은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보조금 지급 내용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보조금 지급자료와 불일치가 발견되었다.



다. 가입형태별 보조금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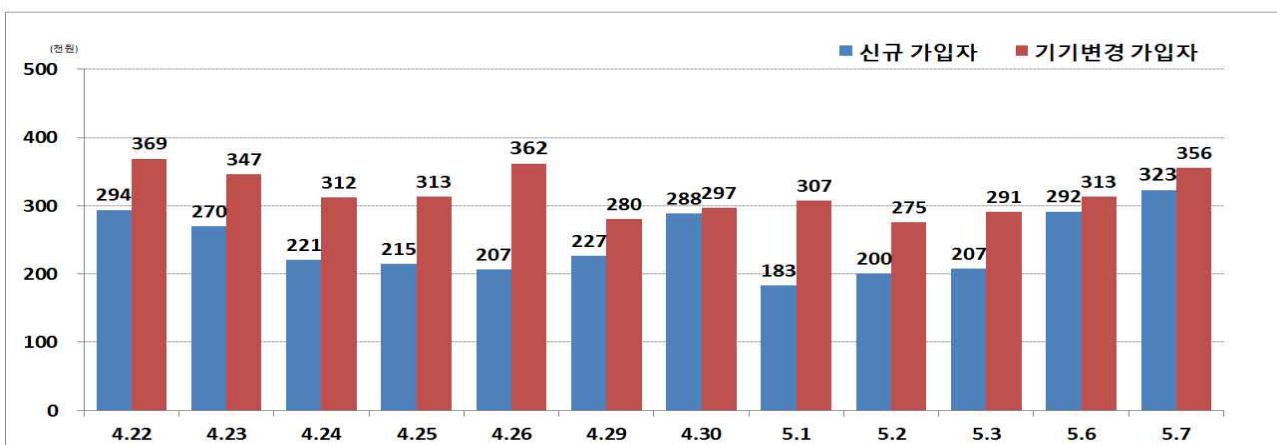
조사대상 기간 중 신규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263천원인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319천원으로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신규 가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의 보조금 추이 비교 〉

(단위 : 천원)

구분	4.22	4.23	4.24	4.25	4.26	4.29	4.30	5.1	5.2	5.3	5.6	5.7	전체 평균
신 규(A)	294	270	221	215	207	227	288	183	200	207	292	323	263
- 번호통	293	275	228	221	217	238	303	188	210	208	293	328	269
- 일 반	299	248	189	191	160	172	208	160	153	202	280	291	228
기기변경(B)	369	347	312	313	362	280	297	307	275	291	313	356	319
보조금차이 (A-B)	75	77	91	98	155	54	9	124	75	84	22	33	56

※ 보조금 금액은 평균 금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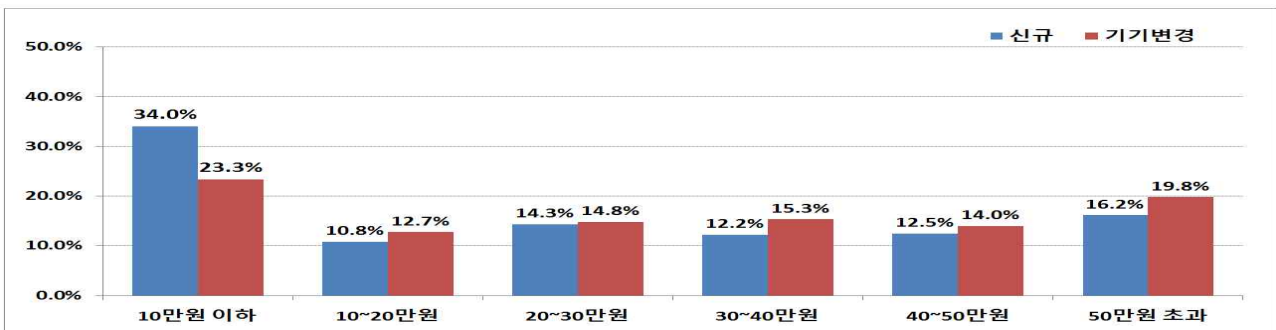


보조금 수준별로 가입자 분포를 살펴보면, 30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받은 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가 각각 40.9%와 49.1%로 기기변경 가입자가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조금 지급수준별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 분포 비교 〉

(단위 : 건, %)

구 분	10만원 이하	10~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만원 초과
신규 (점유율)	3,370 (34.0)	1,070 (10.8)	1,415 (14.3)	1,208 (12.2)	1,236 (12.5)	1,599 (16.2)
기기변경 (점유율)	819 (23.3)	447 (12.7)	520 (14.8)	538 (15.3)	492 (14.0)	695 (19.8)



라. 연령대별 보조금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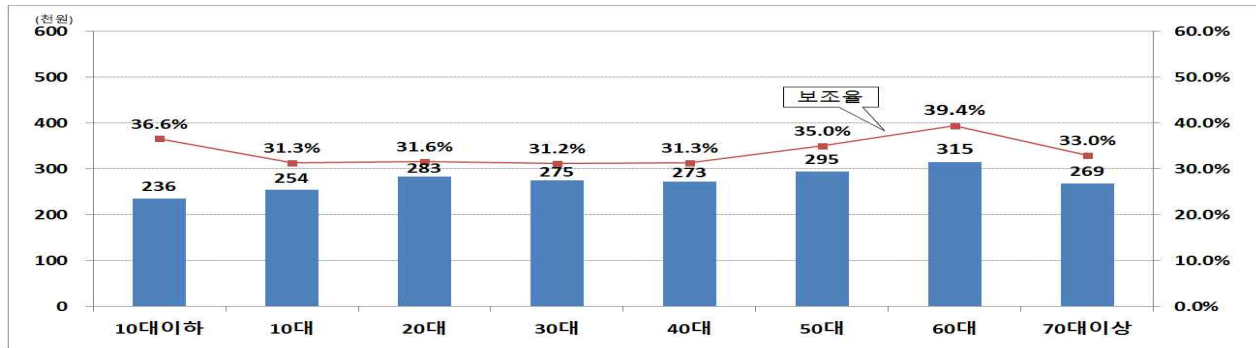
피심인의 가입자들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 미만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236천원으로 가장 낮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60대 가입자는 315천원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그 외 연령대별 보조금 수준은 254~295천원으로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 연령대별 보조금 지급 수준 및 비율 〉

(단위 : 천원, %)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출고가	644	813	896	883	871	842	799	815
보조금	236	254	283	275	273	295	315	269
보조율	36.6	31.3	31.6	31.2	31.3	35.0	39.4	33.0

※ 출고가 및 보조금 금액은 연령대별 평균 금액임



마. 동일기종 단말기 간 보조금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주요 6개 LTE 단말기 기종에 대한 보조금 수준을 살펴 본 결과, 동일기종의 단말기 간에도 시기와 가입형태에 따라 보조금 수준이 다르며, 같은 날짜에도 가입자 간 보조금 지급 폭이 크게 변동하여 동일기종 간에도 보조금 차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주요 LTE 단말기에 대한 일별 보조금 추이를 보면, 갤럭시S3·옵티머스G프로 등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과열 기간 중 주말 직후인 '13.4.22~23일 및 '13.5.6~7일에 보조금이 높게 지급되었으며 일별로도 차별의 정도가 심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 단말기 기종별 보조금 추이 >

(단위 : 천원)

모델명	상품명	4.22	4.23	4.24	4.25	4.26	4.29	4.30	5.1	5.2	5.3	5.6	5.7	평균
SH-E210S_16G	갤럭시S3LTE_16G	323	250	205	205	276	292	274	220	285	281	422	467	349
SH-E250S_32G	갤럭시노트2_32G	326	319	270	268	298	262	309	281	249	264	303	314	299
LG-F180S	옵티머스G	306	245	259	211	308	243	269	227	240	211	260	265	268
LG-F240S	옵티머스G프로	307	318	266	262	292	276	375	241	224	277	281	266	290
IM-A860S	베가NO.6	203	272	152	179	225	344	442	159	175	200	172	239	245
IM-A850S	베가R3	246	133	404	290	190	638	284	310	50	-	220	252	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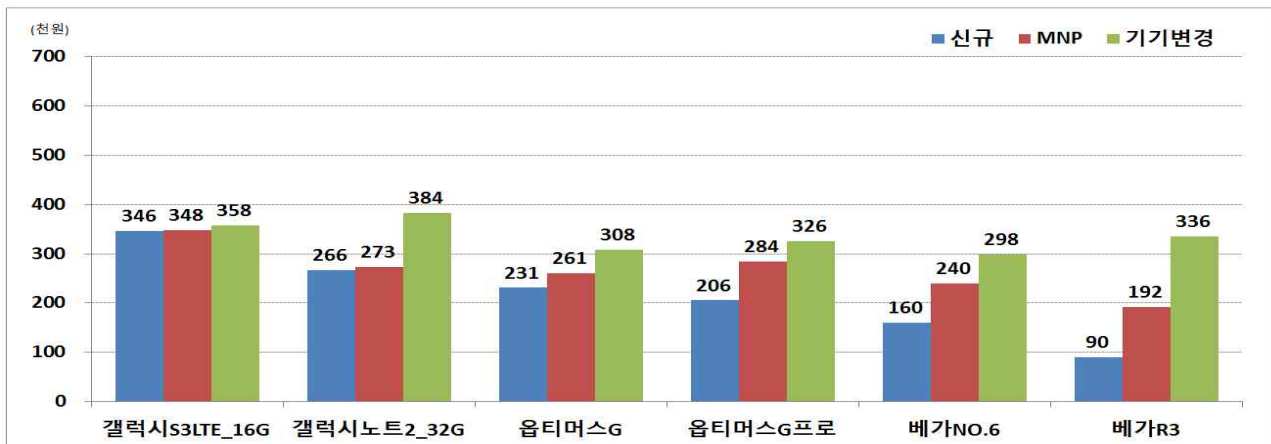
※ 기종별 보조금 금액은 평균 금액임

또한 주요 단말기를 가입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단말기에 따라 갤럭시노트2·옵티머스G프로의 경우 신규일반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 간 차별이 컸으며, 대체로 기기변경 가입자에 보조금 지원이 높게 지급되었다.

〈 동일기종 단말기의 가입형태별 보조금 추이 〉

(단위 : 천원)

모델명	폰네임	출고가	신규		기기변경
			010신규	MNP	
SHV-E210S_16G	갤럭시S3LTE_16G	800	346	348	358
SHV-E250S_32G	갤럭시노트2_32G	990	266	273	384
LG-F180S	옵티머스G	700	231	261	308
LG-F240S	옵티머스G프로	968	206	284	326
IM-A860S	베가NO.6	849	160	240	298
IM-A850S	베가R3	928	90	192	336



동일한 단말기를 구매한 가입자 간에도 보조금 지원의 가입자 간 차별이 심하였는데, 갤럭시노트2의 경우 최대 1,016천원에서 최소 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갤럭시S3의 경우 출고가 대비 평균 보조율도 43.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동일기종 단말기의 보조금 차이 〉

(단위 : 천원)

모델명	폰네임	출고가	보조금			
			평균	보조율	최대	최소
SHV-E210S_16G	갤럭시S3LTE_16G	800	349	43.7	830	0
SHV-E250S_32G	갤럭시노트2_32G	990	299	30.2	1,016	0
LG-F180S	옵티머스G	700	268	38.2	727	0
LG-F240S	옵티머스G프로	968	290	30.0	968	0
IM-A860S	베가NO.6	849	245	28.9	849	0
IM-A850S	베가R3	928	286	30.8	53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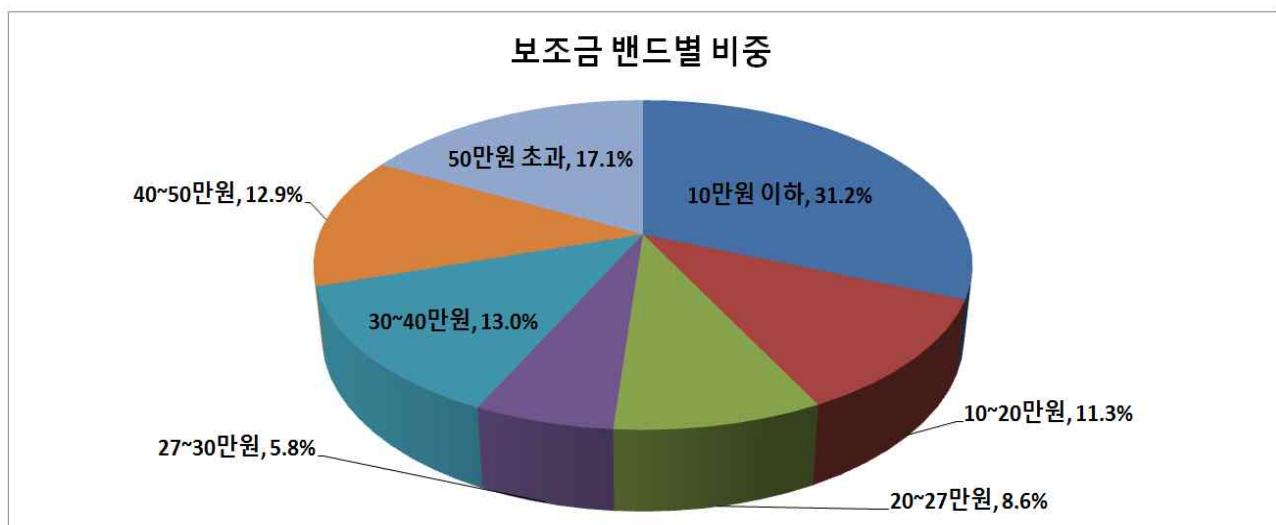
바. 보조금 밴드별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분석대상 가입자를 보조금 밴드별로 분석한 결과, 30만원 초과 보조금을 지급받은 가입자가 43.0%인데 반해 10만원도 받지 못한 가입자가 31.2%로 가입자 간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였다.

〈 보조금 밴드별 가입자 비중 〉

(단위 : 명)

구 분	10만원 이하	10~20만원	20~27만원	27~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만원 초과	합계
가입자	4,189	1,517	1,159	776	1,746	1,728	2,294	13,409
비 중	31.2%	11.3%	8.6%	5.8%	13.0%	12.9%	17.1%	100.0%



I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4] 5호 마목 1)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 부당한 이용자 차별 규제 근거 조항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① [별표 4] 5. 마.**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2. 판단기준

‘10.9.24일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시 확정된 위법성 판단기준에 따라, 가입자 모집 비용이 그 가입자로부터 예상되는 이익을 초과하면 다른 가입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①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¹⁾과 ②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구성된 단말기 보조금²⁾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은 위법

1)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예상이익 × 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財源이 결합되어 조성되고, 제조사 財源은 타 이용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

다만,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속하는 합리적 경영활동으로 볼 수 있는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된 재고소진 목적의 보조금³⁾은 적법하다고 인정

3) ‘12년 이통 3사 가입자의 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0개월(SKT는 20개월, KT는 21개월, LGU+는 18개월로 평균 20개월)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간 중 개통일 기준으로 20개월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는 재고 단말기로 간주

3. 신규모집 금지기간('13.1.8~3.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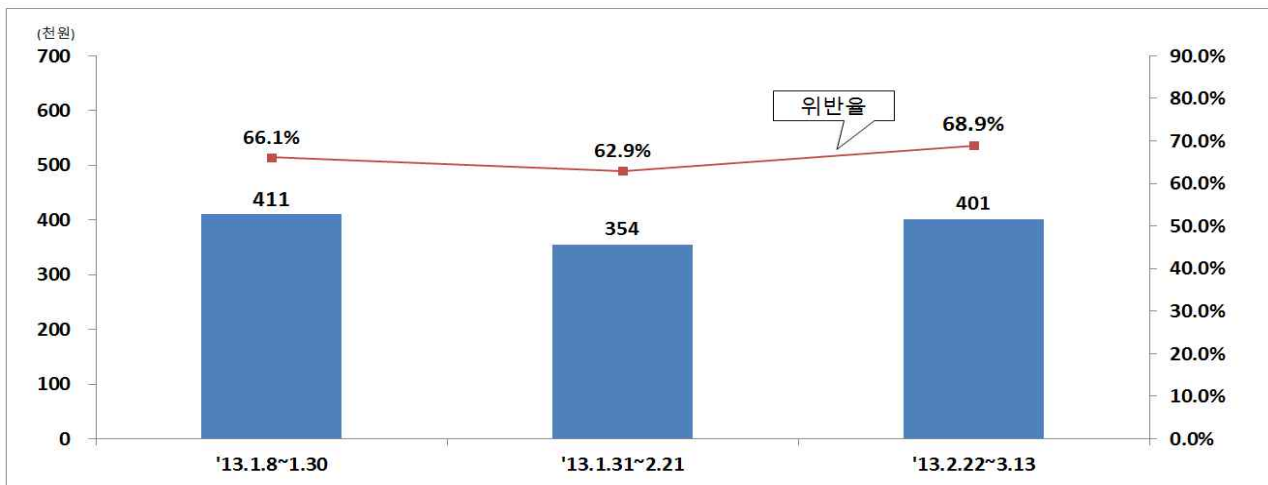
가. 27만원 초과 위반율

조사대상 기간('13.1.8~3.13)의 53,348건 중에서 부당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한 건수가 35,199건으로 위반율은 66.0%였으며, 평균 보조금은 381천원이었다.

< 기간별 평균 보조금과 위반율 >

(단위 : 천원, %)

구분	1.8~1.30	1.31~2.21	2.22~3.13	전체
평균보조금	411	354	401	381
위반율	66.1	62.9	68.9	66.0



나. 가입형태별 위반율

조사대상 자료를 가입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에는 기존 가입자 이탈방지와 타사업자 번호이동 유치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기기변경 위반율은 70.0%, 번호이동 위반율은 65.7%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시장을 과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또한 보조금 지급 수준도 최대 1,117천원에서 최소 0원까지 분산되어 있어 이용자 간 차별정도가 심하게 나타났다.

〈 가입형태별 평균 보조금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평균 출고가	보조금 수준			위 반 율
		평균	최대	최소	
전 체	960	381	1,117	0	66.0
010신규	906	318	1,117	0	57.3
번호이동	976	375	1,117	0	65.7
기기변경	932	423	1,089	0	70.0

다. 연령대별 위반율

피심인은 연령대별로 61.2~72.3%의 높은 위반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평균 보조금도 모든 연령대에서 27만원을 초과하여 보조금 지급기준을 위반하고 있었다.

〈 연령대별 평균 보조금 수준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10대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 체
평균 보조금	408	362	400	385	356	390	405	369	381
위 반 율	72.3	65.2	68.5	65.9	62.0	67.7	69.1	61.2	66.0

라. 주요 단말기별 위반율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 중 제조사 단말기별로 부당한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그 중 주요 단말기를 분석해 보면, 갤럭시S3의 경우 평균 보조금은 445천원, 위반율은 75.8%로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갤럭시노트2는 평균 보조금 348천원 위반율은 66.9%였으며, 옵티머스G 프로는 평균 보조금 369천원에 위반율은 62.7%로 주요 제조사 단말기 간에도 보조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 주요 단말기별 보조금 수준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건, %)

구 분	출고가	평균 보조금	조사건수	위반건수	위반율
갤럭시S3LTE_16G	901	445	10,018	7,596	75.8
갤럭시노트2_32G	1,089	348	15,212	10,178	66.9
옵티머스G	1,000	407	7,093	4,359	61.5
옵티머스G프로	968	369	4,009	2,513	62.7
베가NO.6	849	342	913	554	60.7
베가R3	1,000	334	3,801	2,325	61.2

마. 위반건수의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

조사대상 자료 중 위반건수 35,199건에 대한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⁸⁾을 살펴보면, 40~50만원대가 전체 대비 24.7%로 가장 많은 위반건수가 분포하고 있었으며, 보조금을 50만원 이상 지급받은 비율도 전체 대비 47.3%로 매우 높은 분포율을 보여주고 있다.

〈 위반건수의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 〉

(단위 : 건)

구 분	27~30 만원	30~40 만원	40~50 만원	50~60 만원	60~70 만원	70~80 만원	80~90 만원	90~100 만원	100만원 초과	합 계
위반 건수	2,354	7,484	8,705	7,321	4,626	2,690	949	440	630	35,199
분 포 율	6.7%	21.3%	24.7%	20.8%	13.1%	7.6%	2.7%	1.3%	1.8%	100.0%

4. 과열기간('13.4.22~5.7일)

가. 27만원 초과 위반율

조사대상 기간('13.4.22~5.7)의 13,409건 중에서 부당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한 건수가 6,544건으로 위반율⁹⁾은 48.8%이고 위반평균 보조금은 472천원이었으며, 평균 보조금은 278천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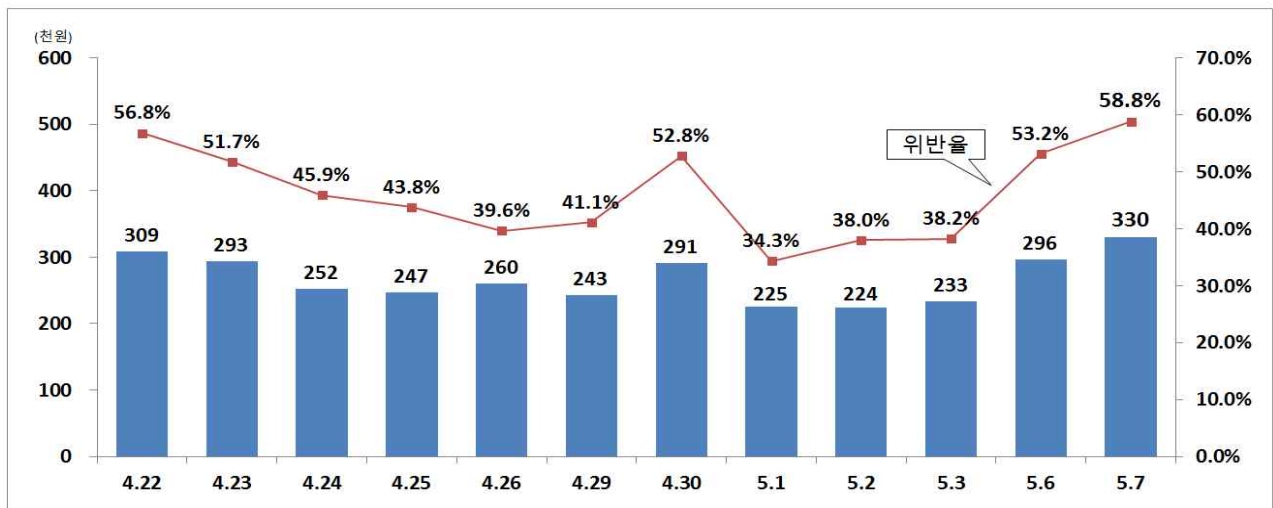
8) 위법성 판단기준인 보조금 27만원을 초과하는 위반건수에 대한 분포율임

9) 조사대상 기간(12일) 중 LGU+의 위반율이 높은 날짜는 3일로 나타남

〈 기간별 평균 보조금과 위반율 〉

(단위 : 천원, %)

구분	4.22	4.23	4.24	4.25	4.26	4.29	4.30	5.1	5.2	5.3	5.6	5.7	전체
평균보조금	309	293	252	247	260	243	291	225	224	233	296	330	278
위반율	56.8	51.7	45.9	43.8	39.6	41.1	52.8	34.3	38.0	38.2	53.2	58.8	48.8
위반평균보조금	477	469	420	423	528	464	476	474	426	459	472	498	472



나. 가입형태별 위반율

조사대상 자료를 가입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과열기간 중에는 번호이동 위반율이 48.5%, 기기변경 위반율은 53.9%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시장을 과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또한 보조금 지급 수준도 최대 1,016천원에서 최소 0원까지 분산되어 있어 이용자 간 차별 정도가 심하게 나타났다.

〈 가입형태별 평균 보조금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평균 출고가	보조금 수준			위반율
		평균	최대	최소	
전체	863	278	1,016	0	48.8
010신규	832	228	1,016	0	38.3
번호이동	864	269	1,015	0	48.5
기기변경	872	319	990	0	53.9

다. 연령대별 위반율

피심인은 연령대별로 41.0~59.4%의 높은 위반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평균 보조금은 20~60대까지 연령대에서 27만원을 초과하여 보조금 지급 기준을 위반하고 있었다.

〈 연령대별 평균 보조금 수준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10대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체
평균 보조금	236	254	283	275	273	295	315	269	278
위 반 율	41.0	42.9	48.7	48.7	48.2	52.4	59.4	48.2	48.8

라. 주요 단말기별 위반율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 중 제조사 단말기별로 부당한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그 중 주요 단말기를 분석해 보면, 갤럭시S3의 경우 평균 보조금은 349천원, 위반율은 60.3%로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갤럭시노트2는 평균 보조금 299천원 위반율은 50.7%였으며, 옵티머스G 프로는 평균 보조금 290천원에 위반율은 41.5%로 주요 제조사 단말기 간에도 보조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 주요 단말기별 보조금 수준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건, %)

구 분	출고가	평균 보조금	조사건수	위반건수	위반율
갤럭시S3LTE_16G	800	349	2,180	1,315	60.3
갤럭시노트2_32G	990	299	3,871	1,961	50.7
옵티머스G	700	268	1,175	467	39.7
옵티머스G프로	968	290	2,009	833	41.5
베가NO.6	849	245	695	278	40.0
베가R3	928	286	38	11	28.9

마. 위반건수의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

조사대상 자료 중 위반건수 6,544건에 대한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을 살펴보면, 30~40만원대가 전체 대비 26.7%로 가장 많은 위반건수가 분포하고 있었으며, 보조금을 50만원 이상 지급받은 비율도 전체 대비 35.1%로 높은 분포율을 보여주고 있다.

〈 위반건수의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 〉

(단위 : 건)

구 분	27~30 만원	30~40 만원	40~50 만원	50~60 만원	60~70 만원	70~80 만원	80~90 만원	90~100 만원	100만원 초과	합 계
위반 건수	776	1,746	1,728	1,236	681	176	76	73	52	6,544
분 포 율	11.9%	26.7%	26.4%	18.9%	10.4%	2.7%	1.2%	1.1%	0.8%	100.0%

5. 소결

피심인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이용자에게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4] 5호 마목 1)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시정조치 명령

1.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등에 10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V.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1. 기준금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령 46조 및 제47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과 연평균 매출액 대비 부과 상한액과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과징금 부과 상한액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이용자이익 침해행위)는 위반 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100이 부과 상한액으로(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별표 5] I. 2호),

이에 따른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376억 3천만원이다.

나. 기준 과징금

신규모집 금지기간('13.1.8~3.13일) 대해서는 신규모집 금지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위반율이 66.0%로 현격히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부과 기준율을 관련 매출액의 1.7%를 적용하며, 과열기간('13.4.22~5.7일)에는 위반율이 48.8%임을 고려하여 1%를 적용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의 기준 과징금은 신규모집 금지기간에는 70억 5천만원이며, 과열기간에는 8억 5천만원이다.

2. 필수적 가중

최근 3년간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로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4회('10.9월, '11.9월, '12.12월, '13.3월) 받았으며, 이번 위반행위가 5회째 이므로 3회째부터 10%씩 가산하여 기준 과징금의 30%를 가산한다.

3. 과징금의 결정

이에 따라 피심인의 과징금은 신규모집 금지기간('13.1.8~3.13일)에는 91억 6천만원이며, 과열기간('13.4.22~5.7일)에는 11억원으로 최종 과징금은 102억 6천만원이다.

VI.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VII. 결론

상기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3. 7. 18.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이 경 재 (인)
	부위원장	김 충 식 (인)
	위 원	홍 성 규 (인)
	위 원	김 대 희 (인)
	위 원	양 문 석 (인)